

# 지속가능경영위원회

## I. 권한

**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권한 중 다음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**
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이사회에 부의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, 기타 일상 경영사항을 심의·의결할 수 있습니다.

## II. 구성

1.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하며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합니다.
2. 지속가능경영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됩니다.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.
3.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,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 결의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.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합니다.
4.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.
5. 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며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.

## III.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는 다음의 사항을 부의 할 수 있습니다.

1.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
  - 연간 또는 중장기 경영방침 및 전략
  - 사업계획, 사업구조조정 추진
  - 해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 협력추진
  - 급여, 근무제도 및 복리후생 변경에 관한 사항
  - 기술 도입계획 및 기술공여정책
  - 연간 및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
  - 중요설비 교체계획 및 신 증설 계획
  - 지점, 공장,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및 폐지
  - 해외지사, 현지법인 등의 설치 이전 및 철수
  - 기타 중요 경영 현안
2. 재무 등에 관한 사항
  - 자기자본 2.5% 미만의 타법인(관계사) 출자, 증자, 출자지분 처분
  - 자기자본 5% 미만의 시설투자, 단기차입금증감
  - 자기자본 2.5% 미만의 채무(지급)보증의 건
  - 자산총액 5% 미만의 유형자산취득, 처분
  - 내부거래의 승인(특수관계자와의 거래)
  - 해외법인 Subordination Agreement (연장)승인
  - 여신 신규약정 / 한도 증액, 연장 / 한도 내 과목한도 변경
  -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
  - 기타 재무관련 주요 현안 /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3. 경영 전반에 걸 Risk 관리에 대한 사항
  - Risk 관리 운영 실태
  - 의사결정을 요하는 Risk 현안
4. 기타 위원장/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-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합니다.
  -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 및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.
  -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재무회계 담당인원을 간사로 두며,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전반을 담당합니다.